

의안번호	2126609
의 퇴 인	신현영의원
회 답 일	2024.4.15.
추 계 번호	24C021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암생존자의 보완대체요법¹⁾ 활용에 관한 상담·교육,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억 800만원, 2029년 2억 400만원 등 5년간 총 11억 8,900만원(연평균 2억 3,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안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408	187	193	198	204	1,189	238

주: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추후 사업 운영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5.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이하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12조의2 (암생존자통합지지 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3. 암생존자의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관한 상담·교육	의무규정
3	안 제15조 (암정보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4.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 5.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상담	의무규정

1)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대체요법”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보완요법”은 침술, 마사지, 향기요법, 음악치료, 한약 등 작용원리와 안전성 및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비침습적이고 부작용이 없다고 인정되는 요법들을 중심으로 기존 의학적 치료와 함께 사용되는 요법을 말함

3	안 제30조(사업)	▣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 - 11.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	의무규정
4	안 제46조 (비용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7의2. 보완대체요법 정보수집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조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2	안 제12조의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	○ 기관의 기본경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
3	안 제15조 (암정보사업)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4	안 제30조(사업)		
5	안 제46조 (비용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안 제5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최근 발표된 “제4차 암관리 종합 계획(2021~2025년)”은 개정안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사항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조문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은 암환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는 “암환자 보완대체요법 관리체계 구축 및 근거마련 연구”(’23.4~’24.12)를 수행 중

- (안 제12조의2) 암생존자의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관한 상담 및 교육은 현행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 현행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은 지정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²⁾(중앙(국립암센터) 1개소, 권역센터 13개소)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은 기존 센터 운영비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현행법에 따라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은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에 대한 상담·교육을 제공하고 암생존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총 13개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비(인건비 포함)로 13억원이 배정됨
- (안 제46조)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완대체요법 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비용을 보조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이자 현시점에 경비 보조 여부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암정보사업(안 제15조)”과 “사업(안 제30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함
 - 개정안은 안 제15조에 명시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사업^①(각종 정보의 생산·수집·관리, ^②활용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교육·홍보·상담) 중 ^②활용에

2)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암생존자와 그 가족이 직면하는 신체·심리·생활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도록 자가 관리 능력 및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여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기능 복귀(직장·학교)를 도모함.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방문하는 암생존자 및 가족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암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심리, 생활(사회·경제적) 문제를 파악하여 필요한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 발췌)

대한 교육자료 개발·교육·홍보·상담을 국립암센터가 수행하도록 명시(안 제30조)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라 안 제15조에 따른 보완 대체요법 사업 전반을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³⁾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하나의 재정수반요인으로 추계함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와 현행 국가암정보센터 사업비를 바탕으로 추계
 - (정보 생산·수집·관리) 현행 국가암정보센터의 인건비 및 전문가활용비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보완대체요법 지식의 생산·수집·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가정
 - － 2024년 기준 국가암정보센터(현원 10명)의 평균 연봉 2,740만원을 준용하며, 국회예산정책처 임금상승률 적용
 - (교육자료 개발) 국가암정보센터의 2024년 교육자료 개발비 3,900만원을 준용하며, 국회예산정책처 명목물가상승률을 적용
 - (교육·홍보·상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라 보완대체요법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한 시스템 개발비로 추계 첫해에 2억 2,600만원을 배정
 - －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관한 홍보비와 이후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기존 사업 일반수용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억 800만원, 2029년 2억 400만원 등 5년간 총 11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3) 대국민 암예방 및 올바른 지식 전달을 위한 최신 암정보 생산체계 확립과 암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목표로 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암지식 생산, 콘텐츠 개발, 암관련 오정보 모니터링과 더불어 국가암정보센터 포털(www.cancer.go.kr) 운영과 암정보 전화상담, SNS 운영 등을 통해 암관련 교육, 홍보 및 상담 등을 진행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인건비	142	146	151	156	161	755	151
교육자료 개발비	40	41	42	42	43	208	42
시스템 개발비	226	—	—	—	—	226	45
합계	408	187	193	198	204	1,189	2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